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369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확인]

참 조 조 문

[1] 화의법 제42조, 제49조, 제61조, 파산법 제17조 제1항, 제298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369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5. 11 선고 2000나2346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금고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AAAA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BA)

【피고,상고인】 CA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CA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정C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BB)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11. 선고 2000나23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파산 전 CA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산회사'라 한다)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 약정 당시 DA건설 주식회사(이하 'DA건설'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원심 판시 별지 제1 및 제2 각 목록 ○○아파트 84세대에 관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상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파산회사는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파산회사가 그 소유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별지 제1 목록 ○○아파트 58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 파산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별지 제2 목록 ○○아파트 26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담보설정의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를 김DB 등 26인에게 분양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파산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구하는 20억 9,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조건미성취, 기망에 의한 채무인수 의사표시 취소, 채무인수 의사표시 철회, 신탁계약 위반, 중요재산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 부존재에 관한 파산회사의 각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파산회사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사표시의 철회, 신탁계약, 손해배상산정 및 중요재산처분에 관한 상호신용금고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파산회사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2000. 4. 19.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파산회사에 대한 위 이전등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화의채권에 해당되어 확정된 화의인가결정의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파산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파산회사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에서 정한 화의조건에 의하면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화의채권의 변제조건은 "원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변제하고, 기발생이자(프라임레이트(한국주택은행의 기준금리)에서 2%를 차감한 이자율로 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변제하며, 장래 발생이자(프라임레이트에서 2%를 차감한 이자율로 하여 2003. 12. 31.까지의 이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변제하고, 2004. 1. 1. 이후의 이자는 당해 연도 말에 변제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대여금의 상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들 채권은 위 화의조건에 대상이 되는 화의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화의조건은 달리 정하여진 바가 없다는 이유로 파산회사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되는 것이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9644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화의채권이 되는 것이고(화의법 제42조), 화의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파산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파산회사에 대한 화의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이상 어느 것이나 화의채권에 해당하여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 청구권의 범위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